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최혁진 · 김우영 · 이성운
정혜경 · 윤종오 · 박지원
한창민 · 김재원 · 손 솔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내란죄·외환죄처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헌법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체 없이 공정하고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사범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원칙 조항에 ‘사범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을 신설하여, 중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관할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하고 전문 법관을 배치하는 것이 헌정 질서 수호와 신속한 사범 정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

2.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전속 관할 지정(안 제32조의2 신설)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의 제1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지정하고,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내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안 제32조의3 신설)

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에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의무화하여,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중대 범죄 심리에 최적화된 인력 구성을 강제하고 판결의 권위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2조의4 신설)

전담재판부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 소속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관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4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당초 고려되었던 국회 추천 인원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외됨).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하거나 지정하도록 한다.

5.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안 제32조의5 신설 등)

판결문에는 법원조직법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사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 녹화, 촬영 및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높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 사법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에 따라 관할을 특정 법원 또는 재판부로 집중시키고 해당 재판부에 전문 법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내란”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를 “외환 범죄의 제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관할) ① 내란죄, 외환죄 및 이에 관한 예비·음모·선동·선전죄(이하 “내란 및 외환 범죄”라 한다)의 제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항소심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내에 각각 3개 이상의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가 지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건은 그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④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항소심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을 지정하거나 특정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의3(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구성) ① 제32조의2에 따른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법원 내 직무상 서열에 관계없이 그 재판부의 심리 진행을 총괄하며,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법관은 동일한 심리상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수성 및 심리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그 구성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소속으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4명
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4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③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5(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 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다수의

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 대한 녹화, 촬영 및 중계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중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이송된 경우, 이송받은 전담재판부는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따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인력 및 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대법원장은 이 법 시행에 맞추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에 제32조의3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관이 충분히 배치되도록 인사 및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조의2(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 사법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에 따라 관할을 특정 법원 또는 재판부로 집중시키고 해당 재판부에 전문 법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 ----- --. <u><삭제></u> <u><삭제></u> <u><삭제></u>

-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다. 「병역법」 위반사건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제1항·제
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
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
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
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
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
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내
란-----
외환 범죄의 제1심 사건은 서
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단서 삭제>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

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
항, 제331조, 제332조(제33
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 한
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
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
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항제2
호·제3호, 제6조(제2조제
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
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
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
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
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

	<u>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u> <u>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u>
<u><신 설></u>	<u>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u>
<u><신 설></u>	<u>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u>
<u><신 설></u>	<u>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u>
<u><신 설></u>	<u>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 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u>
<u><신 설></u>	<u>제32조의2(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관할) ① 내란죄, 외환죄 및 이에 관한 예비·음모·선동·선전죄(이하</u>

<신 설>

“내란 및 외환 범죄”라 한다)의 제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항소심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내에 각각 3개 이상의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가 지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건은 그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④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항소심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을 지정하거나 특정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의3(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구성) ① 제32조의2에 따른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법원 내 직무상 서열에 관계없이 그 재판부의 심리 진행을 총괄하며,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법관은 동일한 심리상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수성 및 심리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그 구성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전담재판부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소속으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4명
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

<신 설>

는 변호사 4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③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 위원회는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5(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 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 대한 녹화, 촬영 및 중계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중

<u>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